

성매매행위등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2. .

발 의 자 : 조배숙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행위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형태별로 강화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한 이윤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원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범죄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성매매행위자 중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된 자로 구분하여 종전의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한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성매매행위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한 기존의 선도보호조치를 폐지하고 성매매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력, 협박,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성매매된 자로 정의 함(안 제2조제3호).
- 나. 성을 파는 행위 및 음란한 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하여 사람을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자,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라.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다만 성매매행위를 한 자 중 성매매된 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할 목적으로 종업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장 또는

종사자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사. 성매매된 자, 성매매알선등행위 등 범죄를 고발자 또는 신고한 자의 사생활보호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아. 성매매된 자, 성매매알선등행위 등 범죄를 고발한 자 또는 신고한 자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종류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차. 외국인여성이 제5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고발 또는 신고하여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카.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그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제8조제1항의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성매매 행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 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7조).

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 의료기관을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시설 이용자의 질병치료, 보건상담 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33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

하는 행위

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행위 및 상태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가.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나. 위계 또는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

다.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 등"
이라 한다)에 의한 중독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
육 및 홍보

2.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원조의 제공

3. 성매매된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간 업무협조 및 외국과의
사법공조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성매매강요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행위
4.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 제4조(금지행위)

1.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행위
2.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3. 성매매행위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성매매행위
5.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제2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제5조(인신매매에 의한 강요행위) ①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매매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나체공연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매매하여 국외에 이송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국내에 이송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조(강요행위 등) ①타인을 강간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 또는 유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마약 등을 제공하여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 감금 또는 감시하는 자 및 이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 카메라 등 자유로운 출입을 어렵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

을 하게 한 자

3.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로써 또는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알선영업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자

2.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자
2.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
2.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자

제8조(성매매행위)①성매매행위를 한 자(성매매된 자를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성을 사는 자가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동화상 기타 영상물의 제작을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마약 등을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광고행위 등) ①성을 파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 또는 나체공연 등 음란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간행물, 유인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성매매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행위를 위하여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 또는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장 또는 종사자(이하 “시설종사원”이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이용자(입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종사원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성매매행위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행위자 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와 관련된 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심리의 비공개) ①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를 고소·고발·신고한 자 및 성매매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 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또는 신변보호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재판장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 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고자 등이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시설종사원 중 1인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개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동석자가 출석하기 전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자 등이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성매매행위 관련 채권의 효력)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종류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채권에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약정한 위약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 각종 채권을 포함한다.

제15조(사법경찰관리의 조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성매매된 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성매매된 자를 이 법이 정한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일시지원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타인의 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권의 내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지원요청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실을 고소·고발 또는 신고하여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이 법이 정한 지원시설의 이용 등 성매매된 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중에 있는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여성에게 금전급부의 불이행,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5조 내지 제7조의 범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몰수·추징) 제5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

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조(보상금) ① 제5조 및 제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몰수·추징된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행정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가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장소로 영업소를 제공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신고에 의하여 영업하는营业소를 대상으로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을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이 있는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간중이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는 속행된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22조(성보호사건의 처리)검사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관할)①성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성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제2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의 성매매 행위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 한다)·수강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보호관찰
4. 이 법이 정하는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성매매행위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보호처분의 변경)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다른법률의 준용) 성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

조제1항,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3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5조 규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행위”로, “가정보호사건”은 “성보호사건”으로 본다.

제4장 지원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28조(지원시설의 종류) ①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지원시설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중 이용 희망자, 제2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을 대상으로 3월의 범위 내에서 숙식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자립지원시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로서 희망자,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 등(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설. 이 경우 이용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청소년지원시설 : 제2호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시설 이용 해당자가 청소년인 경우 성년에 달할 때까지 숙식,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교육 과정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을 지역별 균형과 시설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설의 운영) ①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질병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

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담 및 사회복지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등) ①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등 상담
2. 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시설에의 연계
3. 법률정보 제공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시 동행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33조(의료기관 지정 등) ①여성부 장관은 제24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료기관을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이용자에 대한 질병치료, 보건상담 및 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시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또는 상담소에 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29조제2항 또는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시설이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일시지원 시설,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다만, 시·도시사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립한 시설 또는 상담소에 한 한다.

1. 제29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종사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9

조 및 제4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처분 및 선도보호조치는 유효하다.

제5조(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一時保護所”를 이 법에 의한 “일시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善導保護施設” 및 “自立自活施設”을 이 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女性福祉相談所”를 이 법에 의한 “상담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1조의 規定에 의한 지원시설”로 한다.

제38조제3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제16조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31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방해하거나 부정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 받게 하거나 지급 받은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